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축사 내 악취저감 시설 지원 추가 등>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30호)
▣ 송기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57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4

1.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축사 등에 대한 악취저감 시설 설치 지원 추가 (임종득, 송기헌의원안) ····· 4

2.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실시 추가 (송기헌의원안) ····· 11

Ⅰ. 제안경위

1.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가.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6. 25.

다. 회 부 일 : 2024. 6. 26.

2.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가. 제 안 자 : 송기헌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7. 12.

다. 회 부 일 : 2024. 7. 15.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며 축사 인근 주민의 민원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2. 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

현행 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과 악취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며 악취로 고통받는 축사 인근 주민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및 같은 항 제6호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축사 등에 대한 악취저감 시설 설치 지원 추가 (임종득의원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송기헌의원안 제47조제1항 제6호의3 신설)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두 개정안은 현행법 제4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임종득의원안	송기헌의원안
제4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신 설>	제47조(기금의 용도) ①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축사 등 대통령	제47조(기금의 용도) ①- ----------. 1. ~ 6. (현행과 같음)

	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신 설>		6의3. 축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7. ~ 10. (현행과 같음)	7. ~ 10.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관계부처 의견

(농림축산식품부)

□ 현행법 제3조[1] 및 제47조제1항제6호[2]에 따라 축사 등의 악취저감 시설·장비 구축을 이미 지원하고 있으므로,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개정안의 "축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함.

(기획재정부)

□ 개별 지원시설마다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포괄적 지원 규정과 중복되고, 법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볼 때,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1)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3) 검토 의견

□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축사 내 악취저감 시설 설치 지원(임종득, 송기헌의원안)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는 가축분뇨로 인한 하천오염 및 악취 등 환경오염과 주거밀집에 따른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해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특히,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악취 저감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임에 따라 악취로 고통받는 축사 인근 주민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바,[3]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축사발전기금 용도에 '축사 등에 대한 악취저감 시설 설치 지원'을 추가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발전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는 현행법 제47조제1항 중 제6호[4]에 이미 "축산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을 규정하고 있어 축사악취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3년도에 76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임.

---

3) 오마이뉴스 "소, 돼지 똥냄새, 못 살겠다" 민원 쇄도하는 마을(2024. 8. 11.)
경기일보 장수천 옆 불법 '똥물농장'… 비오면 산책로 악취에 '꽥' [현장, 그곳&](2024. 8. 10.)
충청투데이 "일주일째 방치된 가축분뇨… 냄새 때문에 못살아"(2024. 8. 1.)

4)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주요 사업별 요약 】

○ (축산악취개선)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 필요한 **시설**·기계·장비 등 지원(시군단위 공모사업)

* (주요 악취저감시설)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등

○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축산악취 관리가 필요한 축사 및 자원화시설에 실시간 암모니아, 온·습도 등 측정을 위한 ICT기계·장비 지원

○ (공동자원화시설) 개별농가 분뇨처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위탁시설**(에너지화시설,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구축을 위한 시설·기계·장비 등 지원

○ (가축분뇨이용촉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 및 바이오차, 고체연료 활용 등 가축분뇨의 활용 확대를 위한 이용촉진비 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최근 4년간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편성액	91,988	110,318	92,488	76,848
집행액	91,912	110,318	92,488	76,84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2024. 8. 19) 제출

□ 다만, 축사악취 개선을 위한 사업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 제47조 제1항제6호는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으로 악취 저감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에 따라 악취저감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고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축사 악취로 인해 고통받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 축사 악취 저감 장비 및 시설 지원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고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사악취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축사악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전국에 다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 사업 추진 및 관리·감독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실시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악취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그동안의 실시 경과 등에 대하여 충실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축사 인근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환경부 소관인 「악취방지법」에서는 축산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정의[5]하여 시설의 설치신고(제8조), 악취방지시설의

5)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공동설치(제8조의3), 개선명령(제10조), 과징금(제12조), 사용중지명령(제13조) 등의 규제를 통해 악취를 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일한 환경부 소관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한 가축분뇨 유출 금지 및 적정 처리 의무(제10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제8조), 분뇨처리시설 설치기준(시행규칙 제8조)[6] 등을 통해 악취 저감·방지를 위한 여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7]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악취배출시설)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시설의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1.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시설
(이하 생략)	

6)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방지시설 설치, 약품 등을 이용해 악취를 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7)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운영 중

* 특정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탈취탑(스크러버) 등

**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 공공(지자체)처리시설 지원, 악취방지법은 악취저감 관련 기술 지원(한국환경공단 위탁)만 운영 중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은 업계의 요구에 따라 규제·지원 방법, 지원 규모 등 세부사항을 민·관 협의체를 통해 조율 중이며, 향후 농식품부·환경부 예산에 반영 계획중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제시

2.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실시 추가(송기헌 의원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현행법 제4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47조(기금의 용도) ①----------.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축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7. ~ 10.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인근 주민지원사업 실시를 추가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8]에 부합하지 않으며, 축사 인근의 범위가 모호해 사업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축사 분포('24.2월초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 123,221호)를 고려 시 사업 범위가 넓어 상당한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의 고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축산법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발전기금을 설치한다.

3) 검토 의견

□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실시'를 추가하고 있음.

이는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경감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3항[9]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사용, 수용,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법률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대 행정에서는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토지이용규제가 불가피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여 해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9)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예컨대, 공항 소음·발전소 주변지역·상수원 보호 구역 관련 분야에서 지역주민 복지향상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지역 주민 지원사업 실시 관련 유사 입법례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기본지원사업: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제9조(주민지원사업)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영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다른 유사 입법례의 경우 공항, 발전소,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① 공익적 목적으로 건설 또는 지정된 공공시설로 인하여 ②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특별한 희생을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축사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공공시설로 인한 불편이 아닌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축사 관리자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상기 주민지원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6